

#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63
------------	-----

제출년월일 : '99. 5.

제 안 자 : 안산시장

## □ 개정이유

개정 건축법령의 공포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반주거지역의 4종미관지구내에 단독주택과 균린생활시설의 복합주택에 관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 □ 주요골자

가. 일반주거지역 중 4종미관지구내에서 균린생활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의 2분의 1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지역·동지구내에서 지상2층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36조제5항제1호나목)

나. 일반주거지역 4종미관지구중 이주민에게 분양한 택지에는 균린생활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지하층을 포함한 바닥면적이  $500m^2$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지역·동지구안의 이주민에게 분양 택지내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안 제36조제5항제1호다목)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 : 덧붙임

- 건축법 제45조(지역 및 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시행령 제69조(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99. 4. 12 ~ 5. 1(20일간)
- 예고질과 : 의견없음

##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5항 제1호 나목 중 “면적과”를 “규모와”로 한다.

제36조 제5항 제1호 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린생활시설로 쓰이는 규모는 지하층을 포함하여 지상2층까지 허용한다.

제36조 제5항 제1호 다목 중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을 포함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안마시술소”를 “근린생활시설은 안마시술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산시 건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안산시 건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건축법

### 第45條 (地域 및 地區안에서의 建築物의 建築)

- (1)都市計劃法에 의하여 지정된 地域안에서의 建築物의 建築禁止 및 제한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2)都市計劃法에 의하여 지정된 地區안에서의 建築物의 建築에 관하여는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市·郡·區의 條例로 정할 수 있다.
- (3)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建築禁止 및 제한은 都市計劃法 第17條 및 同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 및 地區指定의 目的에 적합하여야 한다.
- (4)公園·遊園地 또는 그豫定地안에 있어서는 公園 또는 遊園地의 設置目的에 적합한 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이 아니면 이를 建築할 수 없다.

## 건축법시행령

### 제69조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1)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2)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의 최소너비,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대문의 형태 및 색채와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차면시설·세탁물건조대·장독대 기타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금지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3)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에 관하여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1. 건축조례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2.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3. 제118조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